

■ 주차장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4. 9. 20.>

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요건(제16조의14제1항 관련)

구분		요건
인력	1. 총괄 책임자	<p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사람이 총괄책임자로서 상시 근무할 것</p> <p>가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(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)이 1년 이상인 사람</p> <p>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기계 직무분야</p> <p>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전기·전자 직무분야</p> <p>나. 가목1) 및 2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(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)이 3년 이상인 사람</p> <p>다. 기계·전기·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(학위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)이 5년 이상인 사람</p>
	2. 강사	<p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사람이 강사로서 상시 근무할 것</p> <p>가.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나.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</p>
시설		교육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및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

비고

위 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